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

의안 번호 9-24 제출년월일: 2022. 8. 2.

제 출 자: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○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·3항」에 따라 단원미술관에서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변경 등록에 따른 정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.

○ 정관 변경시 비합리적인 업무승인 순서를 개정하는 사항임.

□ 주요내용

- 단원미술관에서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변경(안 제38조, 제39조)
- 정관변경시 업무승인 진행순서 변경(안 제41조)

구분	정관(현행)	개정			
안산문화재단	① 의회와 협의 ② 이 시청 이건	① 이사회 의결 ② 의회 협의 ③ 시장의 승인			
	<u>② 이사회 의결</u> ③ 시장의 승인				
	④ 주무관청(경기도) 허가	④ 주무관청(경기도) 허가			

- □ 개정안 : 붙임1

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 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사항 없음

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- □ 기타 참고사항
 -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(현행) : 붙임3
 -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개정 결재문서 : 붙임4

〈 붙임 1 〉

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

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제2호 중 "단원미술관"을 "김홍도미술관"으로 한다.

제39조의 제목 중 "(단원미술관 운영)"을 "(김홍도미술관 운영)"로 하며 본문 중 "단원미술관"을 "김홍도미술관"으로 한다.

제41조(정관의 변경) 중 "미리 의회와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"를 "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회와 협의한 후"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	정	안		
제38조(문화예술시설	널 및 운영) ①시	민의 문	제38조(문화예	술시설	및	운영)	①<현행과	같
화예술향수 증진을	을 위해 시에서 설	[립한 문	음>.					
화예술시설을 재	단에서 운영·관리	할 수						
있다.								
②시에서 설립한	문화예술시설은	다음 각	2					-
호와 같다.				_				
1. 안산문화예술의	기전당		1		-			
2. <u> 단원미술관</u>			2. <u>김홍도미</u>	<u>술관</u>				
3. 안산문화광장			3					
4. 기타 문화예술	진흥법에 의한 문	–						
③안산문화예술의전	년당 및 기타 문 년	화예술진	③〈현행과 같	음>				
흥법에 의한 문화		관한 세						
부사항은 별도규정	성으로 정한다.							
제39조(<u>단원미술관</u>	운영) 단원미술	<u>관</u> 시설 7	제39조(<mark>김홍도</mark>	미술관	운영]) <u>김</u> 홍	도미술관	
운영 등에 관한 서	ll부사항은 별도의	운영규						
정으로 정하되 다	음 각 호의 사항	을 포함						
하여야 한다.								
1. 단원 김홍도	관련 자료 수집·3	조사·연구	1.~3. (현행	과 같음	(-)			
및 학회 운영								
2. 단원미술제조작	식위원회 구성 및	단원미						
술제 운영								
3. 미술관 대관료								
흥을 위하여 냉내		용료 등						
최소의 비용 징수								
제41조(정관의 변경	 이 정관을 변경 	경하고자 지	제41조(정관의	변경)				-
하는 경우 <u>미리</u>	의회와 협의한 후	이사회		이사회	에서	재적여	이사 3분의	2
에서 재적이사 3	3분의 2이상의 🦻	찬성으로	이상의 찬성	으로 :	의결	하여 9	의회와 협의	<u> </u> 한
<u>의결하여</u> 시장의	승인을 득한 후 :	도지사의	후					
허가를 받아야 한	다.							